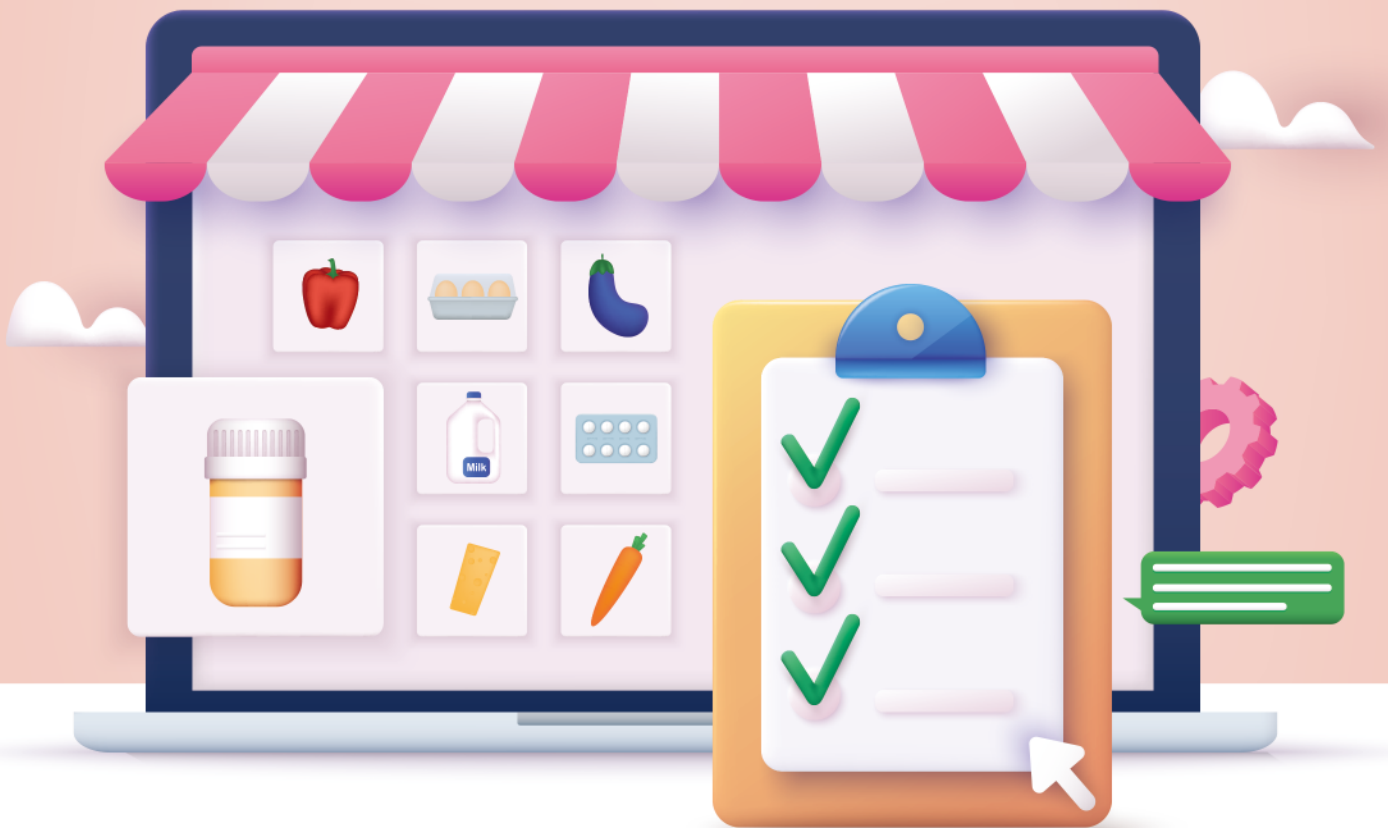


식품의약품안전처 지원

식품·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

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제품의
온라인 판매금지 및 부당광고 관련
자율적 준수 사항과 역할 규정 안내



본 교육과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.



수강 대상



- 식약처 소관 제품 온라인 판매업자
-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
- 식약처 소관 제품 생산 및 납품 사업자

- ✓ 알쏭달쏭 **온라인 판매금지** 및 **부당광고 기준**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고
- ✓ 방대한 관련 **법률**을 **주제별**로 모아 **한번에 체크** 가능하며
- ✓ 품목별 **부당광고**를 **실제 사례**를 통해 알기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.
- ✓ 문서로 배포한 「식품·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」 및 「식품·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해설판」의 방대한 내용을 온라인 수강으로 **빠르고 편하게 습득**하세요!



수강 기간

자율 수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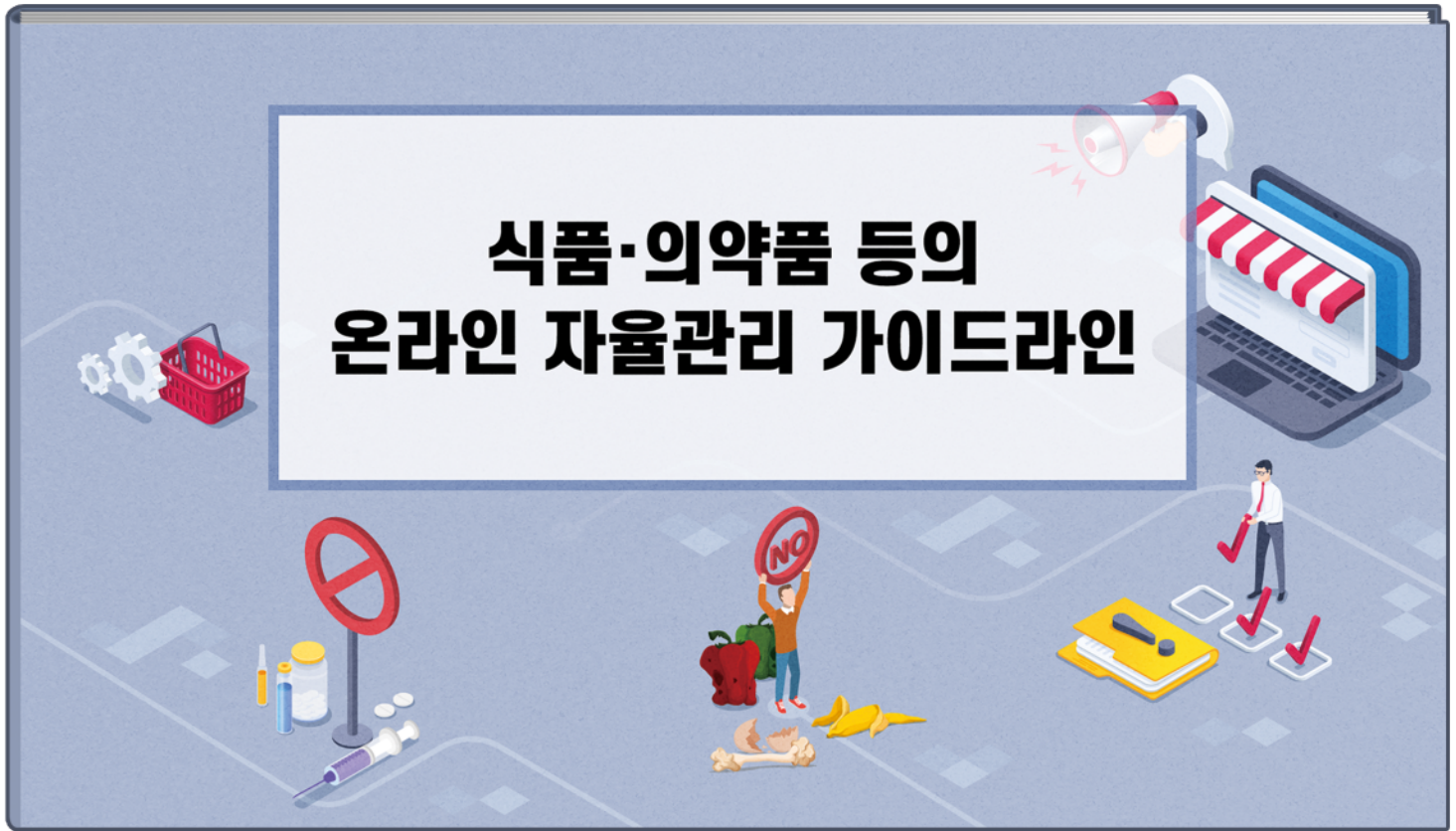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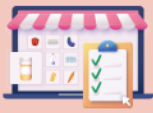
수강료

무료



수강 방법

- 1 <http://kolsa.sdulife.com> 회원가입 및 로그인
- 2 [식약처] 식품·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→ 수강신청
- 3 나의강의실 입장 후 수강 진행
- 4 수강완료 후 이수증 출력 가능



과정 목차

- 1차시 가이드라인의 개요 및 판매금지 식품·의약품 등
- 2차시 판매업자·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관리
- 3차시 식품·의약품 등의 정보 등록 및 일반적 부당광고 금지
- 4차시 품목별 부당광고 I (식품·건강기능식품·식품첨가물·기구 또는 용기·포장 등)
- 5차시 품목별 부당광고 II (화장품 및 의약외품)
- 6차시 품목별 부당광고 III (의료기기 및 위생용품)



식품·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

1차시 가이드라인의 개요 및 판매금지 식품·의약품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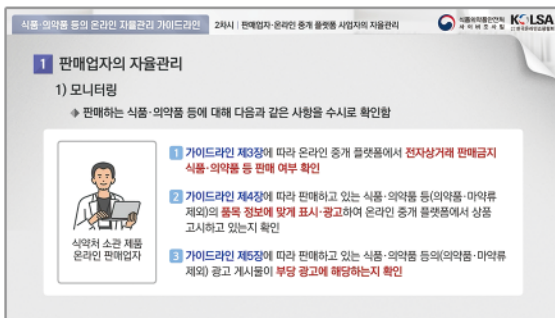
1	가이드라인의 목적 및 적용대상자
주제	◆ 가이드라인 내용 ◆ 가이드라인 목적 ◆ 적용대상자  식약처 소관 제품 온라인 판매업자 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
내용	• 식품·의약품 등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제품을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‘판매업자’와 ‘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’의 자율적 준수 사항 및 역할을 규정 • 건전한 온라인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 교육 안내

2	판매업자의 의무 및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
주제	◆ 판매업자의 의무 ◆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 식품, 식품첨가물, 기구 또는 용기·포장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 마약류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
내용	• 판매업자는 식품·의약품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소비자의 제품 거래에 도움을 제공 •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업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제품을 판매하도록 지원

3	판매금지 식품·의약품 등
주제	1) 식품, 식품첨가물, 기구 또는 용기·포장 2) 축산물 3) 건강기능식품 4) 의약품 5) 마약류 6) 화장품 7) 의약외품 8) 의료기기 
내용	• 각 품목의 온라인 판매금지 사항을 관련 법령과 함께 세부적으로 안내

2차시 판매업자·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관리

1	판매업자의 자율관리
주제	1) 모니터링 2) 판매업자의 준수사항
내용	• 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식품·의약품 등에 대해 수시로 확인해야 할 사항 안내 • 정부 운영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안전 정보 공유 • 판매 품목의 검색 키워드 등록 시 사용하면 안 되는 질병 및 의약품 명칭 안내



2	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관리
주제	1) 모니터링 2)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조치사항
내용	•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된 식품·의약품 등의 정보가 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확인할 사항을 사례와 함께 안내 • 법령 위반 사항 확인 시 조치 사항을 절차적으로 안내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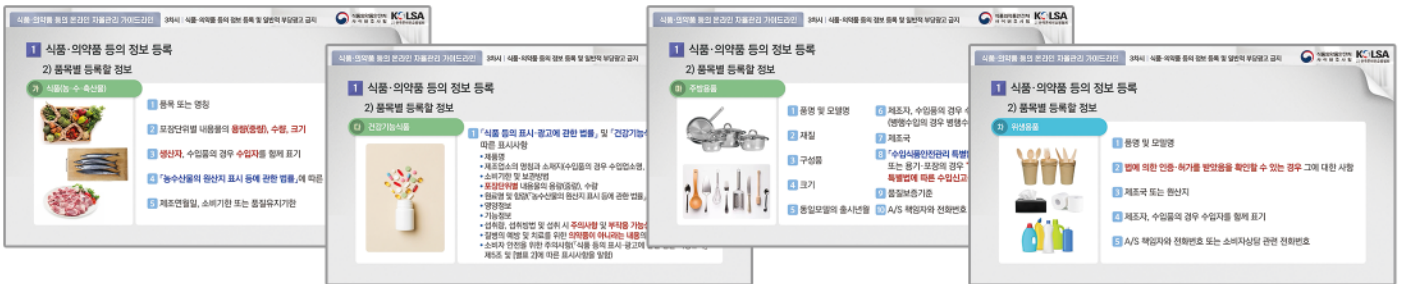
식품·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

3차시 식품·의약품 등의 정보 등록 및 일반적 부당광고 금지

1 식품·의약품 등의 정보 등록

- 주제**
- 1) 식품·의약품 등의 정보 등록 의무
 - 2) 품목별 등록할 정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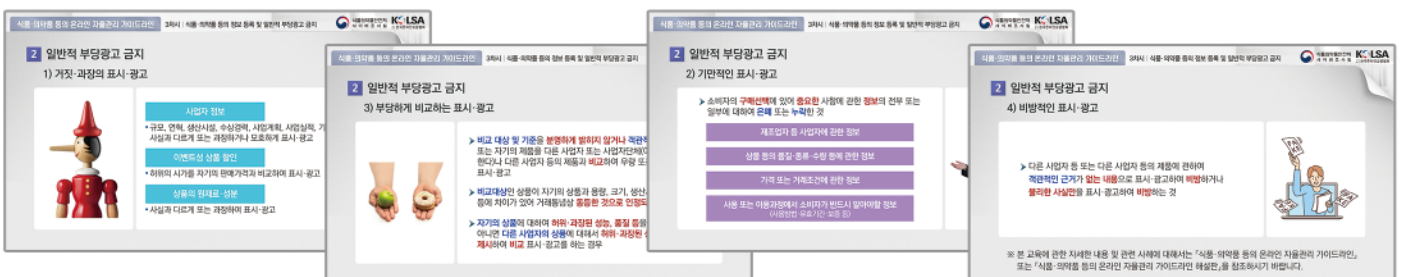
- 내용**
-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의 수단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 등의 품목 정보와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를 표시, 광고하거나 고지해야 함 안내
 - 통신판매의 수단을 통해 다음의 10가지 품목을 판매할 경우 등록해야 할 정보 안내
 - 식품(농·수·축산물), 가공식품, 건강기능식품, 기타 식품 및 식품첨가물, 주방용품, 기구 또는 용기, 화장품, 의약품, 의료기기, 위생용품의 판매



2 일반적 부당광고 금지(『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』 - 공정위 소관 법률)

- 주제**
- 1) 거짓·과장의 표시·광고
 - 2) 기만적인 표시·광고
 - 3)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·광고
 - 4) 비방적인 표시·광고

- 내용**
-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중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부당광고 금지 사항에 대해 안내
 - 거짓·과장의 표시·광고, 기만적인 표시·광고,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·광고, 비방적인 표시·광고란 어떠한 광고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안내



4차시 품목별 부당광고 | (식품·건강기능식품·식품첨가물·기구 또는 용기·포장 등)

1 식품·건강기능식품·식품첨가물·기구 또는 용기·포장 등

주
제

- 1) 질병의 예방·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
- 2)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
- 3)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
- 4) 거짓·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
- 5)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
- 6)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
- 7)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
- 8)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
- 9) 다른 물품으로 오인·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
- 10)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

내
용

- 품목별 부당광고 중 식품·건강기능식품·식품첨가물·기구 또는 용기·포장 등 부당광고에 대하여 안내하며, 실제 위반 사례를 제시하여 안내





식품·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

5차시 품목별 부당광고 II (화장품 및 의약외품)

1 화장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·광고 행위

- 주제**
- 1) 화장품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
 - 2) 화장품 표시·광고 시 준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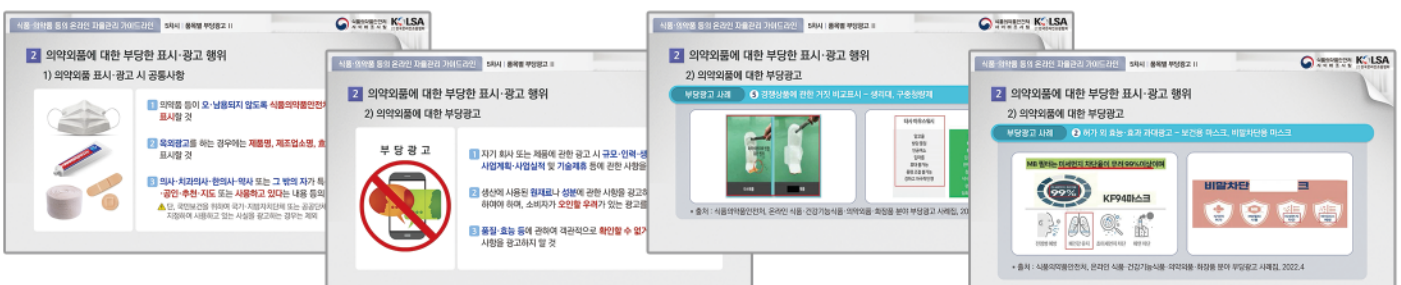
- 내용**
- 화장품의 광고를 할 수 있는 매체 및 수단이 무엇인지 안내
 - 화장품 표시·광고 시 준수해야 할 금지 사항에 대해 안내하며, 실제 위반 사례를 제시



2 의약외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·광고 행위

- 주제**
- 1) 의약외품 표시·광고 시 공통사항
 - 2) 의약외품에 대한 부당광고

- 내용**
- 의약외품을 표시·광고할 때의 공통 적용 사항 안내
 - 의약외품의 부당광고 사항은 무엇인지 안내하며, 실제 위반 사례를 제시



6차시 품목별 부당광고 III (의료기기 및 위생용품)

1 의료기기에 대한 부당한 표시·광고 행위

주제

◆ 의료기기에 대한 부당한 표시·광고 행위

내용

- 의료기기에 대한 부당한 표시·광고 사항은 무엇인지 상세 안내



2 위생용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·광고 행위

주제

- 1)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·광고
- 2)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·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·광고
- 3) 다른 업소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·광고

내용

-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금지되는 표시·광고의 상세 안내
- 표시·광고의 모든 매체와 수단을 통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·혼동의 우려가 있거나 비방하는 표시 광고에 대한 금지 사항 안내



※ 본 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관련 사례에 대해서는 『식품·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』 또는 『식품·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해설판』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본 안내 자료 및 교육과정은
식품의약품안전처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.



식품의약품안전처
사이버조사팀

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
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
문의전화 043-719-1912

KOLSA

대한민국 한국온라인쇼핑협회

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9 중앙빌딩 9층 11호
대표전화 : 02-784-4114
홈페이지 : <http://www.kolsa.or.kr>
온라인교육센터(수강료 무료) : <http://kolsa.sdulife.com>

식품·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

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제품의
온라인 판매금지 및 부당광고 관련
자율적 준수 사항과 역할 규정 안내

